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72
------	------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도병두 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 사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험 가입(안 제3조)

다.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험금 청구(안 제7조)

마.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촉진 법률」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1. 11. ~2022. 11.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 회사” 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30.] [법률 제14891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